##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 발의연월일: 2024. 06. 25.

발 의 자:백혜련·정성호·윤종군

백승아 • 염태영 • 김한규

박희승 • 이병진 • 김영진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 신청에 필요한서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봉사 고지의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 명령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 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②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	
을 내용 등은 법무부렁으로 정	
한다.	
<u>&lt;신 설&gt;</u>	제4조의2(사회봉사 고지의무) 검
	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 명령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을 사
	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
	<u>려야 한다.</u>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u>1년</u>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	
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	
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	
여 집행할 수 있다.	